

울산지방법원 2019. 11. 13 선고 2019가단186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9. 10. 23.

판결 선고 2019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4. 6. 27. 접수 제36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상우

별지